

「학칙 시행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6. 30. 개정 판 (시행 2015. 6. 30.) → 2017. 7. 1. 개정 판 (시행 2017. 7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1/compare?from=59&to=85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6:15:4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성적 및 평점 - 학칙 제30조)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. [표 2]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+ 95-100 4.50 A 90-94 4.00 B+ 85-89 3.50 B 80-84 3.00 C+ 75-79 2.50 C 70-74 2.00 D+ 65-69 1.50 D 60-64 1.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, 전공필수, 교양필수, 전공선택,	제6조(성적 및 평점 - 학칙 제30조)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. [표 2]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+ 95-100 4.50 A 90-94 4.00 B+ 85-89 3.50 B 80-84 3.00 C+ 75-79 2.50 C 70-74 2.00 D+ 65-69 1.50 D 60-64 1.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, 전공필수, 교양필수, 전공선택,

현행	개정안
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. 〈개정 2007-02-23〉 ㉓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. 〈개정 2010-12-17〉 A 이상: 30% 이하 B$\frac{3}{4}$ B$\frac{1}{4}$ 70%+ 이하: 30% 이상 단, 실험실습과목, 연극, 합창(주)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, 전공실기,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 〈개정 2016-03-28〉 A 이상: 40% 이하 B$\frac{3}{4}$ B$\frac{1}{4}$ 80%+이하: 20%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: 30% 이하, B~B+: 0%$\frac{3}{4}$ 90%+ 이하: 10% 이상으로 평가한다. 다만, 별도상대평가(A이상: 40%이하, C+이하: 20% 이상)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. 〈개정 2015-03-16〉 ㉔ (학점포기) 〈삭제 2014-03-31〉	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. 〈개정 2007-02-23〉 ㉓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. 〈개정 2010-12-17〉 A 이상: 30% 이하 B$\frac{3}{4}$ B$\frac{1}{4}$ 70%+ 이하: 30% 이상 단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1. 실험실습과목, 연극, 합창(주)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, 전공실기,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 〈개정 2016-03-28〉 A 이상: 40% 이하 B$\frac{3}{4}$ B$\frac{1}{4}$ 80%+이하: 20%이상 2. 교직과목은 A 이상: 30% 이하, B~B+: 0%$\frac{3}{4}$ 90%+ 이하: 10% 이상으로 평가한다. 다만, 별도상대평가(A이상: 40%이하, C+이하: 20% 이상)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. [개정: 2015.3.16.] 3. 교양 “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”,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. 〈신설 2017-07-01〉 ㉔ (학점포기) 〈삭제 2014-03-31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칙 시행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㉓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.

A 이상: 30% 이하 B $\frac{3}{4}$ B+: 0 $\frac{3}{4}$ 70% C+ 이하: 30% 이상

단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실험실습과목, 연극, 합창(주)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, 전공실기,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A 이상: 40% 이하 B $\frac{3}{4}$ B+: 0 $\frac{3}{4}$ 80% C+이하: 20%이상

2. 교직과목은 A 이상: 30% 이하, B~B+: 0% $\frac{3}{4}$ 90%, C+ 이하: 10% 이상으로 평가한다. 다만, 별도상대평가(A이상: 40%이하, C+이하: 20% 이상)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. [개정: 2015.3.16.]

3. 교양 “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”,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